

거창스포츠파크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 건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9. 1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의안번호 : 제2005 - 41호
- 라. 상정일자 : 2005. 9. 12

2. 제안이유

○ 거창군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나, 용역추진과정에서 주경기장을 신축하는 등 스포츠파크사업으로 계획변경함에 따라 총액입찰 실시를 위하여 의회의 계속비사업변경 동의를 득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사업량 및 사업비 등 변경

구분	당 초	변 경
사업내용	본부석리모델링(2층) 운동장(인조) 및 보조경기장(천연) 육상트랙(우레탄) 등	주경기장 신축 보조경기장 조성 주변공원화사업 등
사업기간	2002~ 2007	2002~2009
사업비	총사업비 9,450백만원 국2,400 도1,000 군2,750 기금 3,300	총사업비 32,500백만원 국15,550, 도4,665 군12,285
-2005	예산액 4,000백만원 국1,500 도450 군1,050 기1,000	예산액 4,550백만원 국1,500 도1,000 군2,05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공사시공을 위하여는 총액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9,450백만원으로 총액입찰이 불가하여 총공사비 32,500백만이 소요될 계속비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입찰에 부하하려는 것임.

○ 계속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에 대하여는 사전 보조내시 또는 협약서 등 예산보조를 위한 별도의 동의사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은 외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태임.

내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매년 22억원 정도의 군비부담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국·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·도비 예산확보의 차질없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스포츠파크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